

|           |                   |      |
|-----------|-------------------|------|
| 의안번호      | 제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4. . .<br>(제회)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이종호<br>(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함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등의 근거가 마련(법률 제20148호, 2024. 1. 30. 공포, 2024.7.3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 대상별 조항 분리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분(안 제9조)

초·중등 여학생과 대학(원)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규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안 제12조)

교육, 훈련 및 연구 활동을 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을 규정함

다. 적극적조치 내에 재직 및 보직목표비율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적극적조치 대상기관에 재직 및 보직목표 비율 설정 권고를 규정함

라. 담당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2)

기관 내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별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 유지와 돌봄 지원,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시 주체를 규정함

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지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신청절차 및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신설(안 제19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의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학생의”를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로, “진학 및 진출”을 “진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1호) 중 “우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학생”을 “여학생과 우수 과학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진로지도사업

3. 여학생의 이공계분야로의 진출지도사업

5. 그 밖에 여학생의 이공계분야의 진로설계 및 동기유발을 위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이공계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여학생에 대한 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2.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원 진학 및 지원사업
3.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4.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 능력 향상 프로그램
5. 여학생과 우수 과학기술인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6. 그 밖에 여학생의 이공계분야의 경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를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직목표 비율

4. 보직목표 비율

제14조의 제목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담당 직원”을 “담당관”으로 변경한다.

제15조의 제목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으로 하고, “담당 직원”을 “담당관”으로 변경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등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등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연구소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담당관을 지정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의3(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3.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지원 사업
4. 그 밖에 연구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 등을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실시하게 하거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법 제14조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설치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지원에 관한 지역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역지원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br>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br>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br>2. ~ 5. (생 략)<br>⑤ (생 략)                                  |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br>-----<br>-----<br>-----.<br>1.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br>2. ~ 5. (현행과 같음)<br>⑤ (현행과 같음)                                                                                                      |
|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u>여학생의</u> 이공계 분야로의 <u>진학 및 진출</u> 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br><br>1. <u>우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u> 를 통한 후원사업<br><u>&lt;신 설&gt;</u> |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① -----<br>----- <u>초·중등교육</u> 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 <u>진출</u> ---.<br>4. <u>여학생과 우수 과학기술인</u> - --<br><br>2. <u>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진로지도사업</u> |

2. (생 략)

3.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로지도사업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신 설>

<신 설>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여학생의 이공계분야로의 진출지도사업

<삭 제>

5. 그 밖에 여학생의 이공계분야의 진로설계 및 동기유발을 위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이공계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분야로의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여학생에 대한 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2.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원 진학 및 지원사업

3.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사

②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 3. (생략)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에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업

4.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연구

개발 능력 향상 프로그램

5. 여학생과 우수 과학기술인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6. 그 밖에 여학생의 이공계분

야의 경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③ -----

제1항 및 제2항-----

-----.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

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음)

6. -----

-----

--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

-----

-----

-----

④ -----

-----

----- 제3항-----

-----

-----.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신 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  
-----  
---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① ----- 비  
-----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  
목표 및 보직목표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신설>

3. (생략)

③ (생략)

제14조(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제15조(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 ①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  
-----  
-----  
-----  
-----  
권고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재직목표 비율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보직목표 비율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 제1항-----  
담당관-----  
-----  
-----  
-----  
-----  
-----  
-----  
-----  
-----.

제15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① -----  
-----

이라 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인 사람을 2년 임기의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은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4. (생략)

④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이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 등

-----  
-----  
-----  
-----  
-----  
-----  
-----  
담당관-----.

② -----  
-- 담당관-----  
-----  
-----  
-----  
--.

③ ----- 담당관-----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담당관이 담당 -----  
-----  
----- 담당관이  
건의한 -----  
-----.

⑤ -----  
-----

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  
기관의 장에게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활동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  
----- 담  
당관-----  
-----

제15조의2(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는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  
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  
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등”이라 한  
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등 위원장  
은 전문위원회등 위원의 호선으  
로 선출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신 설>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연구소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담당관을 지정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의3(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                                                                                                                                                                                                                                                                                                                                                                                            |
|---------------------------------------------------------------------------------|--------------------------------------------------------------------------------------------------------------------------------------------------------------------------------------------------------------------------------------------------------------------------------------------------------------------------------------------------------------------------------------------|
|                                                                                 | <p>1. <u>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u></p> <p>2. <u>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u></p> <p>3. <u>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지원 사업</u></p> <p>4. <u>그 밖에 연구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등을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실시하게 하거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p> |
| 제16조(교육훈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이하 “ <u>교육훈련등</u> ”이라 | 제16조(교육훈련 등) ① -----<br>-----<br>-----<br>----- “ <u>교육훈련 등</u> ”이라                                                                                                                                                                                                                                                                                                                        |

한다)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하거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  
다.

1. 제12조제1항제1호의 여성과  
학기술인

2. (생략)

③ (생략)

<신설>

한다)을 법 제14조2에 따른 한  
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  
-----  
-----.

② -----  
-----  
--.

1.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설치 등) ① 법  
제14조2제5항에 따른 한국여성  
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고자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약정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지원에 관한 지역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역지원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국 단위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활성화하고, 각 지역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활동을 조정·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전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                                                                |
|-------------------------------------------------------------------------------------------------------------------------------------------------------------------------------------------------|----------------------------------------------------------------|
| <p><u>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⑤ 전국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u></p> <p><u>&lt;신 설&gt;</u></p> | <p><u>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u></p> |
|-------------------------------------------------------------------------------------------------------------------------------------------------------------------------------------------------|----------------------------------------------------------------|

## 개정안 [별표 1]

■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별표 1]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지역 주민 등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             |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4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 | 100         | 300   | 500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                  |
| 연 락 처             | (044) 202 - 4841 |